

의안번호	2126157
의 퇴 인	이은주 의원
회 답 일	2024. 2. 14.
추계번호	24B0003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을 둘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29억 9,000만원, 2029년 28억 1,100만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 동안 총 140억 100만원 (연평균 28억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안 제3조)	2,990	2,695	2,733	2,772	2,811	14,001	2,800

주: 1.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2.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4. 국비 및 지방비의 합계액임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지방자치단체는 노동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소속 공무원 중에서 노동정책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노동정책에 관한 전문 인력을 둘 수 있음(제4항)	재량규정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전문 인력의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5항)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로 함
-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공무원 기관부담금 요율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적용¹⁾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소속 공무원 중에서 노동정책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노동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을 둘 수 있음
 - 현행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노사민정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으므로²⁾, 각 지방자치단체에는 이미 노동정

1)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공무원 기관부담금 요율

(2023년 11월 기준, 단위: %)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1.7	1.3	1.3	1.3	1.3	1.3	1.3
공무원 기관부담금 요율	12.999	13.004	13.114	13.210	13.305	13.399	13.494

책과 관련한 전담부서가 마련되어 있거나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운영을 위한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참고로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노사 및 주민대표, 지방관서 등과 협력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 및 노사관계 안정 등 고용·노동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발굴하고 심의하는 회의체를 말하며, 2023년말 기준 166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음³⁾
-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노동정책을 전담할 부서를 새롭게 설치하거나 노동정책담당자를 추가 지정할 수 있으나, 기존 인력 내에서 지정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노동정책담당자 지정’은 현재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이행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됨

□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을 둘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함

- 개정안은 전문인력의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장래에 발생할 비용은 고용노동부 인건비 등을 토대로 추계
- (1인당 인건비 및 기관부담금) 본 추계서에서의 전문인력의 인건비는 고용노동부의 7급 공무원 인건비를 토대로 산출
 - 1인당 인건비는 2022년 기준 고용노동부 7급 공무원 인건비를 지급 인원수로 나눈 평균금액(3,308만 1,000원⁴⁾⁵⁾)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및 공무원 기관부담금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
- (고용인원) 1개 지역에 1명의 노동정책전문인력이 채용된다고 가정
- (채용지역)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사업⁶⁾의 선정지역에 한하여 노동정책 전문인력을 지원한다는 가정을 토대로 산출
 - 고용노동부는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가 설치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노사관계의 안정 및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 바 있음
 - 본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노동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이 채용되는 지역은 2023년 기준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사업이 시행되었던 지방자치단체(68개)로 가정

2)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역 노사민정”이라 한다)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자료: 고용노동부

4) 자료: 고용노동부

5) 초과근무수당 등을 제외한 금액

6) 코드: 2032-305 / 2023년 종료사업임

[표 2] 전문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 및 기관부담금: 2025~2029년

(단위: 만원, 개)

		2025	2026	2027	2028	2029
1인당 인건비 및 기관부담금	1인당 인건비(A)	3,455	3,501	3,547	3,595	3,643
	신규채용에 따른 기관부담 요율(B, %)	13.114	13.210	13.305	13.399	13.494
	기관부담액(C=A×B)	453	462	472	482	492
	추가재정소요 (D=A+C)	3,908	3,963	4,019	4,076	4,134
자치단체 수(E)		68	68	68	68	68
인건비 및 기관부담금(F=D×E)		265,723	269,495	273,317	277,191	281,122

- 주: 1.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2. 초과근무수당 등을 고려할 경우 인건비는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3.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4.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5. 국비 및 지방비의 합계액임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자산취득비) PC·사무집기 등 1인당 자산취득비는 2025년 기준 489.3만원으로 2025년에 일괄 구입하는 것으로 가정
 - － 2020년 기준 정부기관 직원 1인당 자산취득비 419.7만원⁷⁾에 연도별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

[표 3] 전문인력 채용에 따른 자산취득비: 2025~2029년

(단위: 만원, 명)

	2025	2026	2027	2028	2029
1인당 자산취득비(A)	489.3	—	—	—	—
채용인원(B)	68	—	—	—	—
자산취득비(C=A×B)	33,269	—	—	—	—

- 주: 1.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2.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3. 국비 및 지방비의 합계액임

- 추계 결과,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을 둘 경우 인건비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140억 100만원으로 추계됨

7) 국회예산정책처 정책연구용역, 「법안비용추계에 이용되는 단가 및 기준정보에 관한 연구」, 2020. 6.

[표 4] 전문인력 채용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전문인력	2,990	2,695	2,733	2,772	2,811	14,001

- 주: 1.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2.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4. 국비 및 지방비의 합계액임

IV. 부대의견

- ☐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
- ☐ 본 추계 결과는 재량규정인 재정수반요인에 대한 일정 예산의 편성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이유미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go.kr

참고 1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설치현황

※ 자료: 고용노동부

○ 연도별 설치 현황(단위: 개소)

구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광역	17	17	17	17	17	17	17	17	17	17
기초	99	104	113	129	130	133	135	138	141	147
합계	116	121	130	146	147	150	152	155	158	164

- 노사관계발전법 제정('10년) 후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지속 확대, '21년 164개소 (전국 243개 지자체 중 67.5%) 설치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지역(총 164개소)>

구분	설치	권역	지자체명
광역 (17)	17개소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초 (226)	147개소	서울(7)	성동구, 동대문구, 도봉구, 노원구, 금천구, 송파구('21년 신규), 강동구
		부산(4)	사하구, 금정구, 연제구, 기장군
		대구(3)	동구, 달서구, 달성군
		인천(7)	중구('21년 신규), 동구, 미추홀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광주(5)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대전(1)	대덕구
		울산(4)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경기(31)	수원, 성남, 고양, 용인, 부천, 안산, 안양, 남양주, 화성, 평택, 의정부, 시흥, 파주, 광명, 김포, 군포, 광주, 이천, 양주, 오산, 구리('21년 신규), 안성, 포천, 의왕, 하남('21년 신규), 여주, 동두천, 과천('21년 신규), 양평, 가평('21년 신규), 연천
		강원(12)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 횡성, 영월, 정선, 인제, 양양
		충북(10)	청주, 충주, 제천, 보은, 옥천,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충남(15)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전북(8)	전주, 군산, 익산, 김제, 완주, 무주, 임실, 부안
		전남(22)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담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화순, 장흥, 강진,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영광, 장성, 완도, 진도, 신안
		경북(10)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경산, 성주, 칠곡
		경남(8)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거제, 양산, 함안

* '21년 신규 설치: 과천(1.2), 송파구(3.15), 하남시(5.10), 구리시(6.24), 가평군(7.5), 인천 중구(11.5)

□ **(근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협의회), 제3조(지원), 제4조(포상)

□ **(내용)** 지자체가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자체에 지원하여 지역 노사관계 안정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지자체가 지역의 노사 및 주민대표, 지방고용노동관서 등과 협력하여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노사관계 안정 등 지역 고용·노동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발굴하고 협의·심의하는 회의체

□ **(지원대상)**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지자체 중 공모를 거쳐 사업선정심사위원회에서 지원대상 지자체와 사업을 선정

□ **(지자체 지원)** '22년 63개 지자체(광역시 17, 기초 46)에 대해 1,402백만원 지원(재정자립도에 따라 지방비 차등 부담: 광역 45~55%, 기초 15~25%)

(단위: 개소, 백만원)

구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지원예산	300	430	477	920	3,260	1,760	1,760	2,210	2,411	2,158	2,158	2,000	1,900	1,630	1,630	1,556	1,476	1,402
지원 지자체수	4	7	9	15	42	39	39	42	55	66	77	79	80	80	65	65	63	63
평균 지원액	75	61	53	61	78	45	45	53	44	33	28	25	24	20	25	24	23	22

* ('22년) 전체 사업예산(1,602백만원) 중 자치단체경상보조(1,402백만원) 예산

○ **(인프라 지원)** 지원사업의 성과 향상 및 확산을 위한 중앙-지방 연계 강화, 관계자 전문성 강화 등 지원

* ('22년 계획) ▲(중앙-지방 연계 강화) 고용노동정책 설명회 4회, 권역별 담당자 회의 6회 ▲(전문성 강화) 신규 담당자 교육 3회, 의제별·권역별 워크숍(4회), 노사민정 협의회 미활성화 지역 컨설팅(10개소)

○ **(정부포상)** 지자체별 사업성과를 심사하여 우수지자체 선정 정부시상 및 포상금 지급('21년 15개 우수지자체 시상*, 1억원 포상금 지급)

* ▲(대상) 전남, 충주 ▲(최우수상) 경남, 충남, 원주, 부천 ▲(우수상) 부산, 제주, 수원, 아산, 여수, 울산 북구, 이천, 창원, 화성